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 1 절 총칙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 51 조에 의거하여 각 선거별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 자치 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 1 장 선거권, 피선거권

제 1 조 (선거권)

1.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있다.
2.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권은 위 제 1 항의 해당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에게 있다.

제 2 조 (피선거권)

1. 중선위와 각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전공 학회장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2. 중선위와 총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전공 학회장은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 시행 당해 단대 학생회 임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중선위에서 제외된다.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1. 중선위는 당해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단대 학생회로 한다.
2. 중선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해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하며,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원활한 선거 관리·감독을 위하여 각 선거 담당 위원에서 제외된다.)
3. 중선위원은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4. 각 선거의 담당 위원은 최대 6 인으로 한다. (단, 기타 중선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는 위원장 권한으로 대의원 중에서 대학별 각 1 인을 선출하여 둘 수 있다.)
5. 당해 상임위원회 결위 시, 중선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단대 학생회장 1 인으로 한다.
6. 중선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7. 중선위는 당선 확정 이후 3 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모든 홍보물을 제거하고, 선관위실을 본래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회 및 의결) 중선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 중 제 26 조, 28 조, 29 조, 30 조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선거일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제 5 조 (선거일 공고) 중선위는 선거 일정을 투표일 20 일 이전에 확정 공고한다.

1. 본선거는 2 학기 기말 시험 이전에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임기 년도 당해 3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궐선거는 제 25 조에 따른 선거 사유 발생일 30 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6 조 (선거인명부 작성)

1. 중선위는 선거인명부를 투표일 2 일 전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학번, 성명, 투표자 및 선관위 확인을 표기한다.
3. 유권자는 투표 전날까지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오기, 무자격자의 등재 발견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인정된 경우, 중선위는 그 수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투표 시작 이후 선거인명부는 중선위 및 해당 시간의 참관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타인 열람을 금한다.
5. 선거인명부는 정해진 투·개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제 4 장 선거 비용

제 7 조 (비용 부담) 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제 8 조 (비용 책정)

1. 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책정은 중선위에서 정하여 학생처의 승인 후 책정한다.
2. 비용 책정 후 입후보자의 증감에 따라 중선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비용 집행)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선위에서 집행한다.

제 5 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 10 조 (등록)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입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원(소정 양식) 1 부
2. 재학 증명서 각 1 부
3. 전 학년 성적 증명서 각 1 부
4. 각서(소정 양식) 1 부
5. 회원 추천서(소정 양식) 1 부
6. 선거공약 및 상징문 1 부
7. 입후보자 소견문 1 부(한 조에 1 부, A4 용지 2 장 내외)
8. 선거운동본부 상징(소정 양식) 1 부
9. 참관인 명단(최대 10 명) 1 부
10. 선거운동원 명단(입후보자 2 인, 일반 선거운동원 최대 8 인) 1 부

제 11 조 (입후보자의 자격 요건)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에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 시에는 5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재학생)
2. 전체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본 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 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100 인 이상
 - 나. 단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당해 대학 회원 50 인 이상
4.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 개월이 경과한 자
6. 본 절 제 1 장 제 2 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7. 동일 직책의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

제 12 조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 총·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 인 1 조가 되어 출마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 인 1 조가 되어 출마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부')는 입후보자 2 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으로 구성하며, 선거 전 과정에 한 조로서

참여한다. (단, 선본부는 선거운동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선본부는 본 회 또는 해당 대학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선본부에서 중선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후보자 중 1 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관인 및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 가. 본 회 또는 해당 대학의 회원이 아닌 자
 - 나. 현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인 자
 - 다. 현직 및 차기 학(부)과·전공 학회장인 자
 - 라. 당해 중선위 소속인 자

제 13 조(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공고) 중선위는 투표일 10 일 전까지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학생처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운동) 중선위와 각 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행하게 된다.

1. 선본부의 선거운동 기간은 해당 중선위에서 정한다.
2. 중선위는 필요 시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일시, 장소는 선거 일정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단, 소견 발표는 2 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거 포스터 및 리플렛, 피켓, 현수막의 내용, 규격, 부수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은 중선위가 정한다. 현수막은 선관위가 제작하는 것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4. 선본부는 금품 제공, 폭행 및 협박, 유언비어 유포, 불순한 언동, 타 후보의 비방,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본부는 교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 선본부는 각 선관위에서 개최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 발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6 장 투·개표 및 당선인의 결정

제 15 조 (투표 방법) 투표 방법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여 소정의 투표 용지에 이를 기표한다. 전자 투표 또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6 조 (선거 유효) 본 절의 선거는 당해 회원 30 %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제 17 조 (투표 시간) 본 절의 투표 시간은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00 분까지로 하고, 3 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1 일 연장할 수 있다.)

제 18 조 (투표 장소) 중선위는 교내 적당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관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투표 장소에 상주할 수 없다.

제 19 조 (참관인) 투·개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투표장, 개표장,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1. 참관인은 투표 시작 전에 선거인명부의 작성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당일 투표 전후로 투표함 밀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참관인은 정해진 투·개표 장소로의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투표 시 지참물)

1. 투표 시 투표권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 시에 선거인명부와 대조 날인한다. (단, 신분증 미지참 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장의 미지참 시에는 서명으로 대체한다.)
2.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투표권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투표를 할 수 없다.

제 21 조 (개표) 개표는 중선위원이 각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봉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각 선본부의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집계한다.

제 22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당해 중선위에서 제작한 소정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당해 중선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O표 하지 않은 것
4. 어느 기표란에 O표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2 개 이상의 기표란에 O표 한 것
6. O표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식을 한 것
7. 한 기표란에 중첩된 O표를 중첩한 것
8. 당해 중선위에서 지정한 기표 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

제 23 조 (당선인 결정 및 당선인 임기)

1. 중선위는 최고 득표조를 당선조로 하고, 당선 후 학생처를 거쳐 24 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2.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의 임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재선거) 다음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선위가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
3.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4. 제 16 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선위가 재선거를 결정하는 경우
5. 입후보자 불출마로 본선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 25 조 (보궐선거) 다음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임기 만료 150 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

1. 대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확정된 경우
2. 기타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7 장 이의신청

제 26 조 (이의신청)

1.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개표가 종료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중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이의서 및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선위는 이의 내용을 심의.결정하여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선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거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4. 선거심판위원회는 제소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48 시간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선거심판위원회는 당해 학생지도위원회로 한다.

제 27 조 (당선 확정 공고) 중선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24 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벌칙

제 28 조 (주의 및 경고) 중선위는 선본부 구성원이 총학생회 회칙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래 각 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다.

1. 중선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위반 근거와 결정 사항을 선본부에 전달한다.
2. 중선위는 회의를 통하여 경고를 결정하고, 위반 근거와 결정 사항을 선본부에 전달한 후 이 내용을 서면으로 공고한다. (단, 주의 2 회는 별도 통보 없이 경고 1 회로 간주한다.)
3. 주의 및 경고에 대하여 선본부 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별도의 경고로 처리한다.
4. 세 차례의 경고 발생 시, 중선위는 제 29 조에 따라 학생처를 거쳐 입후보자 등록 또는 당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중선위는 세 차례의 경고에 대한 위반 근거, 결정 사항, 자격 박탈과 관련된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29 조 (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취소) 중선위는 다음의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본 절 제 10 조 1, 4, 5 항의 서류 작성을 허위로 한 경우
2. 선본부가 본 절 제 14 조를 위반한 경우
3. 선본부가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30 조 (처벌) 제 28 조에 따라 세 차례의 경고가 발생한 선본부에 대하여는 중선위가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학생처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보칙

제 31 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중선위가 이를 정하여 학생처의 인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 3 절 대의원 선임 시행세칙

제 10 장 대의원회

제 32 조 (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부)과·전공의 학년별로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3 조 (자격) 대의원 입후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 전체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1 학년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3. 유급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집행부, 학(부)과·전공 학회장은 겸임할 수 없다.

제 34 조 (선임) 대의원은 각 학(부)과·전공의 학년별 재학생의 지원으로 선출한다.

1. 복수 지원 시, 해당 학년 재학생의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제 35 조 (선임 시기)

1. 본선은 임기 년도 전년의 임기 만료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1 학년 대의원은 임기 년도 3월 중에 선임한다.)
2. 재선은 임기 년도 당해 3월, 6월, 9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
3. 보선은 제 39 조에 따른 선거 사유 발생일 20 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36 조 (등록) 각 단대 상임위원에 선출된 당해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등록한다.

제 37 조 (자격 취소)

1. 대의원장은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학생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 사퇴 상신 보고 목적의 해임 발안을 갖는다.
2. 대의원장은 제 33 조에 어긋난 자에 대해 자격을 상실, 사퇴 상신 보고 목적의 해임 발안을 갖는다.

제 38 조 (재선) 다음 경우에는 재선한다.

1. 선관위가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3. 제 44 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관위가 재선을 결정한 경우
4. 입후보자 불출마로 본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 39 조 (보선) 다음 경우에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확정된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 12 장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제 40 조 (구성)

1. 대의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상설 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 41 조 (선임관리위원회) 대의원회 상임위원 선임관리위원회는 당해 년도 상임위원회로 한다. (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2 인 이상이 선거 전 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자격)

1. 의장, 부의장은 4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재선 및 보선 기에는 5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재학생)
2. 상임위원은 2 학기 이상 등록하고, 7 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재선 및 보선 시 2 학기 이상 등록하고, 8 학기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재학생)

제 43 조 (선거)

1.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상임위원은 각 단대별 대의원이 호선한 대표 대의원 2 인으로 한다.

제 44 조 (선출 방법)

1.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을 재투표에 붙인다.)
2. 2 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1 차에서 2 차까지의 득표 누계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정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 45 조 (자격 해임)

1. 학생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대의원장이 발의하여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2.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장이 발의하여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장 보칙

제 46 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학생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 년 1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 년 06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 년 10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 년 12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 년 05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